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4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동아・민병덕・백승아

김현정 · 김준혁 · 최민희

김우영 · 최기상 · 박정현

송재봉 • 모경종 • 박용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 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.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 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 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3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"를 "수업료, 급식비 및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90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, "300만원"을 "4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③
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	
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	
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	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	
여 해당 과세기간에 <u>대통령령</u>	<u>수업료, 급</u>
<u>으로 정하는 교육비</u> 를 지급한	식비 및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
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	으로 정하는 교육비
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	
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	
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	
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	
공제하지 아니한다.	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・	1
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	
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	
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	
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	

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2.·3. (생 략)

④ ~ ⑪ (생 략)

1천만원
<u>400만원</u>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⑪ (현행과 같음)